

2025년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) 입주기업 모집 (1차) 연장 공고

해운대구와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에서는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공간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우수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도전하는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5년 2월
해운대 창조비즈니스 센터장

1 모집개요

- 모집대상 :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입주공간 등 초기사업화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- 입주공간 :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공동사무실 사무공간($3.3m^2$)
 - ▶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2층(해운대구 반송로 877번길 60)
- 모집규모 : 1인실 4개
- 입주기간 : 최대 2년
 - ▶ 6개월 단위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여부 결정
 - ▶ 해당자 없을 경우 추가 모집 예정
- 입주비용 : 무상지원
 - ▶ 일정수준의 출석율,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율 등 충족필요

2 지원대상

- 신청자격(모두 만족)
 -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(창업 5년이내) 또는 예비창업자
 - ▶ 신산업분야(인공지능, 빅데이터, 바이오, 의료기기 등) 가점
 -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지역 거주자
 - ▶ 해운대구민 가점
 -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 1인 창조기업 정회원 가입자

○ 신청자격여부 확인 및 정회원 신청

- K-startup 홈페이지(K-startup.go.kr) → 사업소개 → 시설·공간·보육
→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→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
→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정회원 신청하기

* 정회원 승인요청 센터

부산광역시 ▾ 부산 해운대구 ▾

*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여부를 검토 요청할 지역 및 센터 1개 선택
*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여부는 선택한 센터에서 확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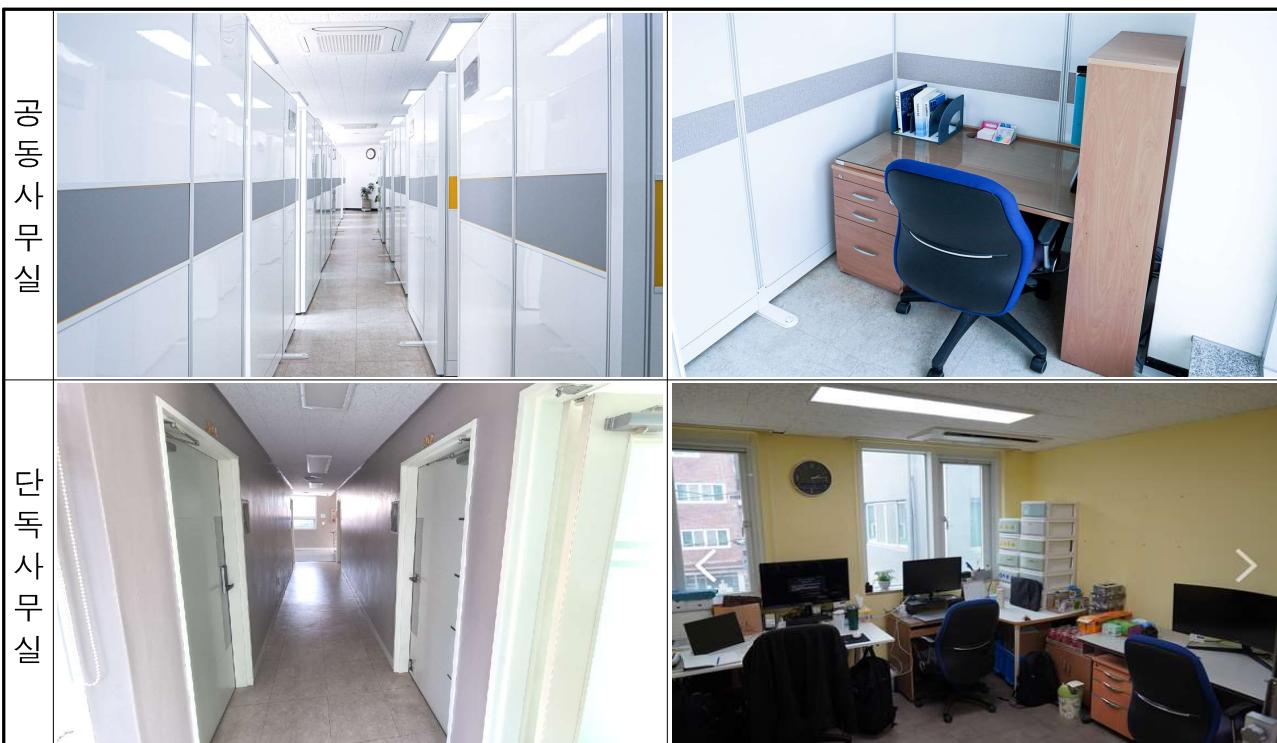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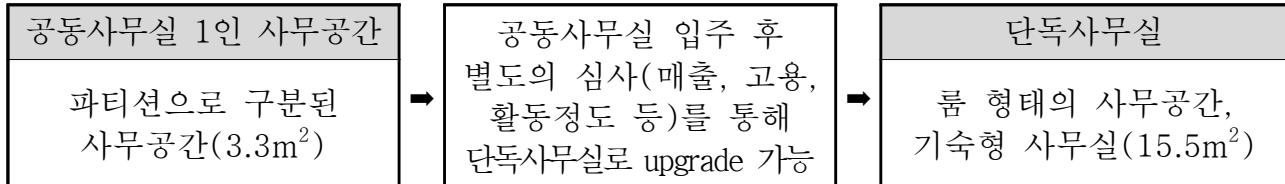
▶ 기타정보 정회원 승인요청 센터는 위와 같이 “부산광역시 / 부산 해운대구”로 선택

3

지원내용

○ 입주공간

- 공동사무실 1인 사무공간($3.3m^2$) ▶파티션으로 구분된 사무공간
- 사무공간별 책상, 의자, 책장, 유무선 인터넷 제공
▶공동사무실 입주 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단독사무실로 upgrade 가능



○ 공용공간 및 공용기기

- 야외주차장, 교육실, 회의실, 휴게실 등
- 컴퓨터, 복합기, 팩스기, 세단기, 코팅기, 정수기 등



○ 사업화 프로그램

- 선택형지원사업 지원(홈페이지, 홍보물제작 등) ▶별도 평가 실시
- 창업 및 사업화관련 교육,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
-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(법률, 경영, 회계, 기술, 지식재산권 등)
-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, 지역대학 등 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

4

신청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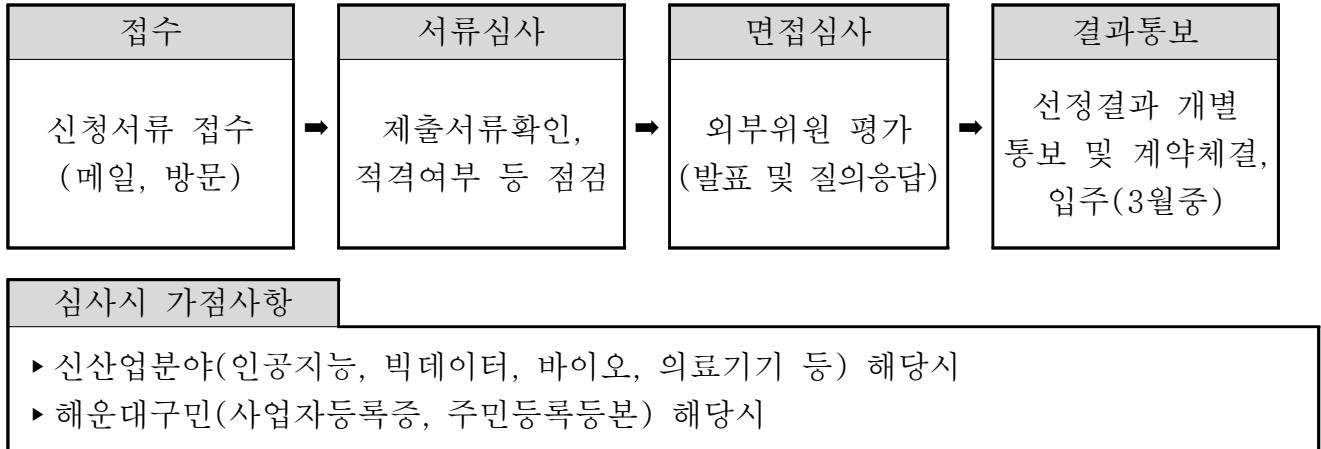
○ 신청기간 : 2025. 2. 27(목) ~ 3. 14(금), 18:00까지

○ 신청서류(모두 제출)

- 입주신청서(붙임1) 1부
- 사업자등록증(기창업자) 또는 주민등록등본(예비창업자) 1부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- 특허, 인증, 자격, 수료, 수상자료 등 사본 각 1부(해당자)

- 신청방법 : 메일(weprosinfo@naver.com) 또는 방문접수
 - (문의처) 김송연 행정매니저(051-749-6281)
 - (방문처)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 877번길 60 해운대 창조비즈니스 센터 2층 사무실

○ 선정절차



○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

- 타 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-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가자격을 공고일 기준 제한 중인 자(기업)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현재 휴업중인 기업
-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
- 기타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

- [붙임] 1. 입주신청서 서식 1부.
 2. 1인 창조기업 범위 1부.
 3. 1인 창조기업 확인방법 1부. 끝.

[붙임1] 입주신청서

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입주신청서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 분야구분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식서비스 | |
| 성명 | | 연락처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핸드폰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 | |
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 | | | |
| 생년월일 | 0000.00.00 | 창업유무 | 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(창업일 : 년 월 일) | | | |
| 공동창업 유무 | <input type="checkbox"/>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창업(예정일 : 년 월 일) | | | |
| 주소 | | | | | | |
| 창업아이템명 | | | | | | |
| 입주희망기간 | <i>0000.00.00 ~ 0000.00.00</i> | | | | | |
| 현사업화 단계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개발단계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상품화단계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화단계 | |
| 신산업 분야 해당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공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빅데이터 <input type="checkbox"/> 5G+ <input type="checkbox"/> 블록체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서비스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실감형콘텐츠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능형로봇 <input type="checkbox"/> 스마트제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스템반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율주행차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수소차 <input type="checkbox"/> 바이오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기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능성식품 <input type="checkbox"/> 드론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래형선박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난/안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스마트시티 <input type="checkbox"/> 스마트홈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재생에너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이차전지 <input type="checkbox"/> CCUS(탄소포집)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원순환 및 에너지 활용 | | | | | |
| 기업현황 | 기업명 | | | 주요생산품 | | |
| | 법인등록번호 |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 |
| | 전년도 매출액 | 백만원 | 전년도 수출액 | | 백만원 | |
| | 고용인원 | 명 | 투자유치액 | | 백만원 | |
| 지원센터 입주이력 | 센터명 | | | | | |
| | 입주기간 | <i>0000.00.00 ~ 0000.00.00 (총 개월)</i> | | | | |
|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| | | | | | |
| 등록 ()개 | | 출원 ()개 | | 인증 ()개 | | |
| 공동사업자 | 성명 | 생년월일 | 연락처 | | 담당분야 | |
| | | 0000.00.00 | | | | |
| | | 0000.00.00 | | | | |

*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은 타 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나, 전체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간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『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』에 입주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(대표) 신청인 : _____ (인)

- 첨부 1. 사업계획서 1부.
 2. 대표자이력서 1부.
 3.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.

<첨부1> 사업계획서 [5장 내외]

1. 창업 동기 및 추진사항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창업 동기 | ◆ 창업동기 및 창업목표를 기술 |
| 입주 중 추진사항 | ◆ 입주 중 사업추진 내용 |

2. 사업화 및 추진계획

| | |
|------------|--|
| 제품(기술)의 개요 | ◆ 기술개발의 필요성, 창업과제의 용도, 사양, 주기능, 성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 |
| | |

| | |
|-------------|--|
| 국내외 시장규모·전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시장규모, 시장전망, 국내외 시장동향, 시장 진입 조건 등 시장구조 및 특성, 주요 수요처 등 |
| 파급효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사업화 성공에 따른 고용인원 창출 등 고용창출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제 우대 ◆ 사회적 가치(일자리 안정자금, 비정규직의 정규직화, 경력단절 채용 등)를 위한 노력과 계획 |

<첨부2> 대표자이력서 ▶별도 양식 사용가능

▶ 별도 양식 사용가능

<첨부3> 개인(기업)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

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
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는 「1인창조기업 지원센터」 운영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, 제2항, 제33조,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◆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수집·이용 목적 |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 「1인창조기업 지원센터」 입주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 검토, 가점항목 검토, 선정 및 입주계약체결, 입주관리, 창업프로그램 안내 및 운영,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, 지원 사업 관련 이력관리, 자료 활용 등 제반사항 |
| 수집·이용 항목 |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자우편주소, 연락처; 휴대전화 번호 등), 기업현황(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소재지, 설립일), 대표자 현황, 영업상황 |
| 보유·이용 기간 |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되며 보존기간은 선정평가일로부터 이후 5년까지입니다. 단, 보유목적 달성을 시 또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없이 파기됩니다. |
|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|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위 항목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필수항목이므로,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면 「1인창조기업 지원센터」 입주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
◆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제공받는 자 |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, 중소벤처기업부(지방청 포함), 창업진흥원,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|
|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|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, 중소기업부, 창업진흥원 :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의 보고 자료, 평가, 이력관리,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: 사업의 보고 자료, 평가, 중복수혜 검증,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 |

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?

개인(신용)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

(동의함 동의하지 않음)

2025 년 월 일

동 의 자 : (서명)

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장 귀하

[붙임2] 1인 창조기업의 범위

1인 창조기업 범위

- (정의)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
* 관련법령 :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

- (유예기간)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
* (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)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<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(시행령 별표 1) >

| 구 분 | 해당 업종 |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광 업 |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| 05 |
| | 금속광업 | 06 |
| | 비금속광물 광업; 연료용 제외 | 07 |
| | 광업지원서비스업 | 08 |
| 제조업 | 담배제조업 | 12 |
| |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19 |
| | 1차 금속 제조업 | 24 |
|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|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35 |
| | 수도사업 | 36 |
| 하수.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|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 | 37 |
| |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 | 38 |
| | 환경 정화 및 복원업 | 39 |
| 건설업 | 종합건설업 | 41 |
| | 전문직별 공사업 | 42 |

| 구 분 | 해당 업종 |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도매 및 소매업 |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| 45 |
| | 도매 및 상품중개업 | 46 |
| | 소매업; 자동차 제외(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) | 47 |
| 운수업 |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| 49 |
| | 수상 운송업 | 50 |
| | 항공 운송업 | 51 |
| |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| 52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숙박업 | 55 |
| | 음식점 및 주점업 | 56 |
| 금융 및 보험업 | 금융업 | 64 |
| | 보험 및 연금업 | 65 |
| |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 | 66 |
| 부동산업 및 임대업 | 부동산업 | 68 |
| | 임대업; 부동산 제외 | 69 |
|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보건업 | 86 |
| | 사회복지 서비스업 | 87 |
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| 91 |
|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|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96 |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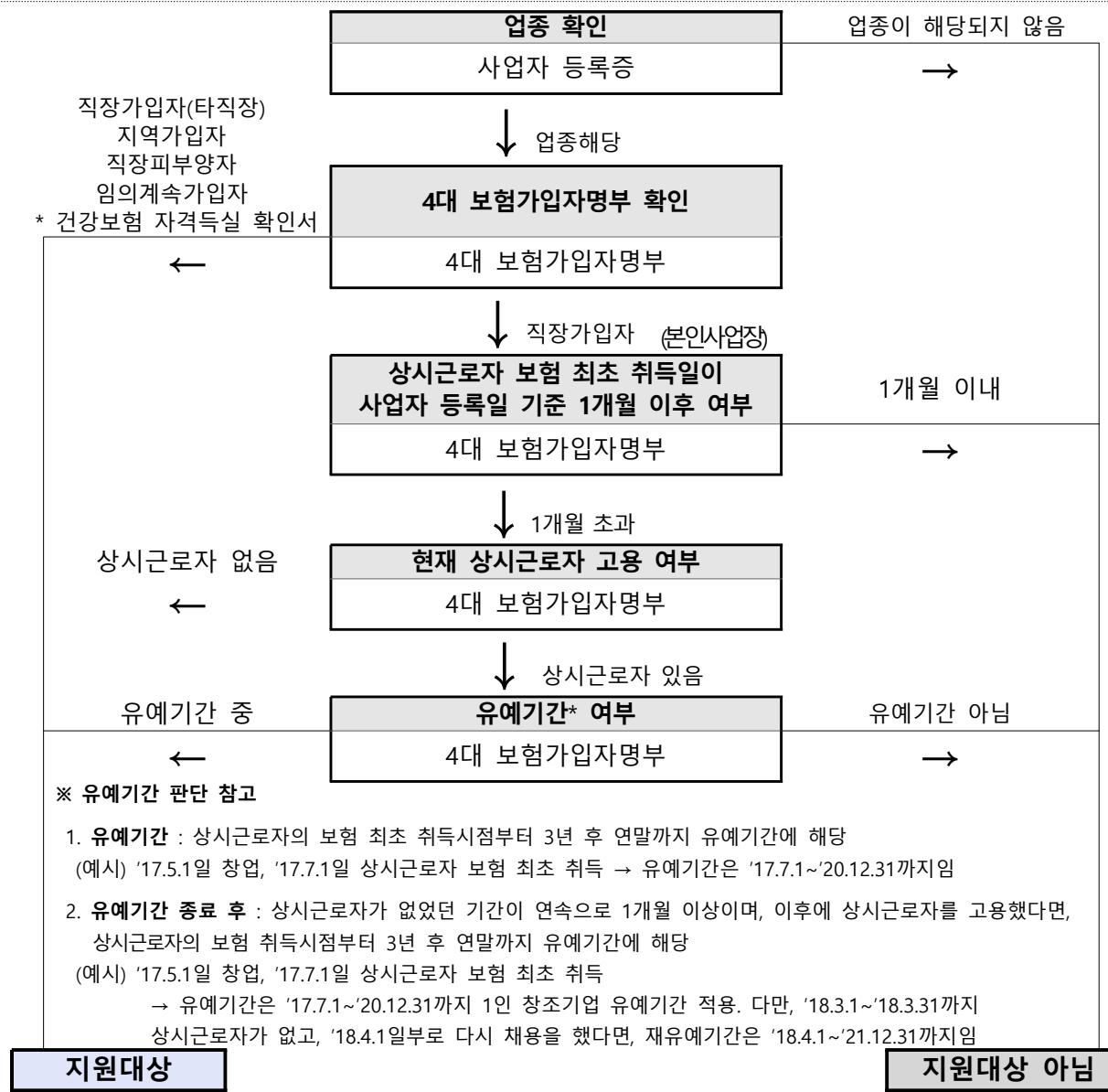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(1자리 코드), 중분류(2자리 코드), 소분류(3자리 코드), 세분류(4자리 코드), 세세분류(5자리 코드)로 구성되며,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"05(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)"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

[붙임3] 1인 창조기업 확인방법

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

- ◆ **업종 확인** :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,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
 - *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
- ◆ **상시근로자 확인** :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, 단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
 - * 직장가입자(타직장), 지역가입자(세대주, 세대원), 직장피부양자, 임의계속가입자 등
- ◆ **유예기간** :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 - *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

<준비서류> 사업자등록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보험가입자명부



[붙임4] 신산업 창업 분야

| ■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신산업 창업 분야(제3조제1항 관련) | |
| ① | 인공지능 |
| ② | 빅데이터 |
| ③ | 5G+ |
| ④ | 블록체인 |
| ⑤ | 서비스플랫폼 |
| ⑥ | 실감형콘텐츠 |
| ⑦ | 지능형 로봇 |
| ⑧ | 스마트제조 |
| ⑨ | 시스템반도체 |
| ⑩ | 자율주행차 |
| ⑪ | 전기수소차 |
| ⑫ | 바이오 |
| ⑬ | 의료기기 |
| ⑭ | 기능성 식품 |
| ⑮ | 드론·개인이동수단 |
| ⑯ | 미래형 선박 |
| ⑰ | 재난/안전 |
| ⑱ | 스마트시티 |
| ⑲ | 스마트홈 |
| ⑳ | 신재생에너지 |
| ㉑ | 이차전지 |
| ㉒ | 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 |
| ㉓ |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|